#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0월 17일 백 종 훈 의원 등 25인
- 나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17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0. 21.) 상정
  - 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0. 21.) 상정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위원회 백 종 훈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시정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"인터넷방송"과 "웹진"에 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부천의 도시브랜드인 "판타지아"를 이용하여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"인터넷방송국"을 "판타지아방송국"으로 "웹진"을 "판타지아웹진" 으로 새롭게 명침을 정함.(안 제 3조)
- 방송주기는 주 1회 이상, 발행주기는 수시게재로 명시함. (안 제5조 및 제6조)

○ 인터넷방송국과 웹진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민기자,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, 모니터 요원 등을 구성하는 기준을 정함.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안 제정 사유는?	○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 및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알권리의 충족과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됨.

# 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- 없 음
- 5. 심사결과
 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
 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 - 없 음

####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인터넷방송"이라 함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홍보매체를 말하며 "웹진"이라 함은 인터넷상에 웹을 기반으로 소식을 전하는 홍보 매체를 말한다.
- 제3조(명칭) 부천시 인터넷방송국(이하 "방송국"이라 한다)의 명칭은 "판타지아방송국"으로 하고, 부천시 웹진(이하 "웹진"이라 한다)의 명칭은 "판타지아웹진"으로 한다.
- 제4조(발행인 등) 방송 제작인 및 웹진의 발행인은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- 제5조(방송주기)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주1회 이상 제작하여 방송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6조(발행주기) 웹진의 기사는 수시로 제작하여 게재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7조(프로그램 내용)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.
  - 1. 시정 · 구정 · 동정 · 의회소식
  - 2. 생활·교양·문화·건강·취업 정보
  - 3. 시민 생활편익에 필요한 프로그램
- 제8조(게재사항) 웹진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시정·구정·동정·의회소식
- 2. 문화·예술·산업·경제·교육·청소년·여성·복지·환경·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시민의견 및 기고
  - 4. 만화, 칼럼 등 연재물

제9조(시민기자 등) ① 시장은 방송국과 웹진 운영을 위하여 시민 기자와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, 모니터 요원(이하 "시민기자 등" 이라 한다) 등을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시민기자 등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,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③ 시민기자 등에 여성 참여 비율을 30% 이상 되도록 한다.
- ④ 시민기자 등은 방송과 웹진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⑤ 시장은 시민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
  - 2.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 - 3.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
- 제10조 (수당) 시장은 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번	안 호	제324호
의	결	2008. 10. 24.
년 <sub>월</sub>	일일	(제147회)

발의년월일 : 2008. 10. 17.

발 의 자 : 백종훈 의원 등 25인

#### 1. 제안이유

○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"인터넷방송"과 "웹진"에 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부천의 도시브랜드인 "판타지아"를 이용하여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"인터넷방송국"을 "판타지아방송국"으로 "웹진"을 "판타지아 웹진"으로 새롭게 명칭을 정함.

(안 제 3조)

- 방송주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수시게재로 명시함. (안 제5조 및 제6조)
- 인터넷방송국과 웹진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민기자,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, 모니터 요원 등을 구성하는 기준을 정함.

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##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인터넷방송"이라 함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홍보매체를 말하며 "웹진"이라 함은 인터넷상에 웹을 기반으로 소식을 전하는 홍보 매체를 말한다.
- 제3조(명칭) 부천시 인터넷방송국(이하 "방송국"이라 한다)의 명칭은 " 판타지아방송국"으로 하고, 부천시 웹진(이하 "웹진"이라 한다)의 명칭은 "판타지아웹진"으로 한다.
- 제4조(발행인 등) 방송 제작인 및 웹진의 발행인은 부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- 제5조(방송주기)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주1회 이상 제작하여 방송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6조(발행주기) 웹진의 기사는 수시로 제작하여 게재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7조(프로그램 내용)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.
  - 1. 시정 · 구정 · 동정 · 의회소식
  - 2. 생활·교양·문화·건강·취업 정보
  - 3. 시민 생활편익에 필요한 프로그램

- 제8조(게재사항) 웹진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시정·구정·동정·의회소식
  - 2. 문화·예술·산업·경제·교육·청소년·여성·복지·환경·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시민의견 및 기고
  - 4. 만화, 칼럼 등 연재물
- 제9조(시민기자 등) ① 시장은 방송국과 웹진 운영을 위하여 시민 기자와 시민비디오 저널리스트, 모니터 요원(이하 "시민기자 등" 이라한다)등을 위촉할 수 있다.
  - ② 시민기자 등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, 시민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③ 시민기자 등에 여성 참여 비율을 30% 이상 되도록 한다.
  - ④ 시민기자 등은 방송과 웹진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임무를 수행한다.
  - ⑤ 시장은 시민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  - 1.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
  - 2.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 - 3.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
- 제10조 (수당) 시장은 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